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024. 2.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20
- 나. 제 안 자: 강동오 의원 외 9인
- 다. 제안일자: 2024년 2월 16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2월 20일(화)

2. 제안사유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
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상해보험료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
- 2) 「청년기본법」 제21조
- 3) 「병역법」 제16조, 제20조, 제22조

나. 입법예고: 2024. 2. 13.~ 2. 19.(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가. 제정 목적

-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2월 16일 강동오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군복무 중인 마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이는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이 인정하는 기여·희생·손실이 발생하면 우리 국가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존을 배려하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광역시 7, 기초 15)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만 운영함.
- 지난 2019년 1월 14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시행한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하여, 이후 부산 중구, 양산시, 익산시, 정읍시 등 주로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양산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장보험 가입에 취약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시행 중에 있음.(제15조의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항 신설)

〈 타 지자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 현황 〉

(2022. 10.기준)

구 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 동구
지원규모	27,200명	105,295명	7,200명	192명
사업비	11억원	32억원	3억원	17백만원
추진실적	-	'18~'19년 : 1,725명 (22억원) '20년 : 1,589명(16억원) '21년 : 2,584명(11억원) '22년 7월 : 1,265명	-	'20년 : 7명(58백만원) '21년 : 8명(8백만원) '22년 7월 : 2명
비 고	'22년 본예산 반영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주민참여예산)	보험계약기간 3년(21.1.~24.1.)	'22년 사업 시작	'20년 사업 시작

※ 2024년 예산편성 현황

-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등
 - 기초자치단체: 서울 동작, 부산 중구, 경남 양산, 전남 화순, 전북 정읍 등
-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마포구 군복무 대상자는 약 1,500여 명이며, 단가는 타 지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4만 원¹⁾으로 산정하여 연간 약 6천 만 원으로 추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소요금액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복무기간 단축 및 군입대 인원의 불확실성, 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사의 수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량으로 추계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임.

1) 1인당 군복무 상해보험 단가: 전라북도 40,000원, 동작구 58,300원

※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 홍보비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 상해보험료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소계(b)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총 비용(a-b)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 2022년 병무통계연보(발행 병무청)에 따라 서울시 군복무 청년 대비 마포구 군복무 청년 인원 산정 : 매해 약 1,000명×1.5년(군복무기간) = 약 1,500명
-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후유장해),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1인 보험료 산정 : 약 40천원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예산 : 1,500명 × 40천원 = 60,000천원

- 한편, 우리 구에서 기시행 중인 마포구민 안전보험과의 중복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설계 시 ‘구민 안전보험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상해보험료의 지원(안 제4조), 지원대상(안 제5조), 준용(안 제6조)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1조에서 정의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개념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마포구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의미함.

- 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한정되며, 대상은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마포구임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및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주체인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됨.
- 안 제5조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의무경찰과 의무소방대원은 제도가 폐지됨²⁾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함.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또한, 가입대상에서는 병역법에서 보충역으로 규정하는 대상인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각 군부대 등에서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 따라 중복적인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2) 국방부가 현역 입영대상자가 부족해지지자 2018년 전환복무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함.(90%이상 명문대 엘리트였던 이들...의무소방대 사라진다./중앙일보, 2023. 6. 26.)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제정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함. 그리고, 동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 다만, 군복무는 한 지자체의 청년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닌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것인 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좀 더 강화된 보험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 한편, 보험금 청구는 개인별로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인자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 향후 제도의 실시도 중요하지만 면밀한 관리와 사후평가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체결을 위한 상해보험료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마포구 군복무 청년 × 상해보험 보장에 따른 1인 보험료
- 비용추계기간: 2024년~2028년(5개년)
- 주요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후유장해), 입원일당 등을 보장으로 하는 상해보험료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 홍보비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 상해보험료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소계(b)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 총 비용(a-b)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61,500	61,500	61,500	61,500	61,500	307,500

5. 덧붙이는 의견

-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보장내용의 변경 또는 보험사의 수가 변경에 따라 매년 (재)가입시 예산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이효진
연락처	02-3153-864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22년 병무통계연보(발행 병무청)에 따라 서울시 군복무 청년 대비 마포구 군복무 청년 인원 산정 : 매해 약 1,000명×1.5년(군복무기간) = 약 1,500명
-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후유장해),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1인 보험료 산정 : 약 40천원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예산 : 1,500명 × 40천원 = 60,000천원

붙임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현황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총 22개 지자체(광역 7, 기초15)

(24. 1. 기준)

연번	구분	조례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1	광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22.11.9.
2	광역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	20.9.25.
3	광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청년기획과	19.1.14.
4	광역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청년정책관	22.11.4.
5	광역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청년정책관	22.4.11.
6	광역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청년희망정책과	21.12.29.
7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청년정책과	22.10.21.
8	기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경제정책과	23.9.27.
9	기초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시민안전과	20.7.9.
10	기초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기업일자리과	19.9.20.
11	기초	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재난안전과	19.3.15.
12	기초	고창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신활력경제정책관	23.1.20.
13	기초	대구광역시 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자리지원과	23.10.11.
14	기초	대구광역시 수성구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	청년여성가족과	23.6.30.
15	기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정책추진단	22.9.30.
16	기초	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	안전도시과	21.5.13.
17	기초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교육정책과	23.10.6.
18	기초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정책사업단	21.9.27.
19	기초	칠곡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총무과	23.9.26.
20	기초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경제과	23.7.14.
21	기초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공동체과	22.11.15.
22	기초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청년정책과	23.3.2.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